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3. 7.

금 융 위 원 회

1.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 마련(안 제369조제2항 등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416조가 개정(9.22일 시행 예정)됨에 따라,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본시장법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-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